

의료폐기물관리 안내서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>

자원순환과

목 차

-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집 p.1

- 자율점검의 날 결과보고서 p.9

-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p.11

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집

1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

준수사항

▶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며,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【위반사례】

○ 위반내용 :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

○ 관련 법 :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,2항

○ 조치사항 : 고발(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)

○ 위반사례

- 00의원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득하고 의료 행위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,
-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00의원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 약 1톤 가량을 00시 00동 00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 및 적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임.

2

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

준수사항

▶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(의료폐기물)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시·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·도지사에게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※ 「의료법」에서 규정한 종합병원은 환경부 장관의 확인을 받는다.

【위반사례】

○ 위반내용 : 변경신고 미필(의료폐기물)

○ 관련 법 :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4항

○ 행정처분 : 고발(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
○ 위반사례

- 의료폐기물배출자는 신고한 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30% 이상 증가할 경우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하나,
- 00의원은 관할구청에 손상성 폐기물이 월 5톤 발생됨을 신고하였으나 점검 결과 월평균(최근 6개월) 배출양이 15톤으로 신고한 양보다 200% 증가하였으나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임.

■ 신고·확인 대상 폐기물 발생 사업장

구 분	관련법규	신고서식	작성대상 폐기물
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	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(별지 제12호)	① 오니(월평균500kg 이상) ② 폐농약, 광재, 분진, 폐주물사, 폐사, 폐내화물, 도자기 조각, 소각재, 안정화 또는 고정화 처리물, 폐촉매, 폐흡착제, 폐흡수제,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(각각 월평균 50kg이상,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이상) ③ 폐합성고분자화합물, 폐산, 폐알칼리, 폐페인트, 폐레카 또는 폐석면(각각 월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이상) ④ PCBs함유 폐기물 ⑤ 폐유독물 ⑥ 의료폐기물 ⑦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 (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)

■ 의료폐기물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

- 관련법규 :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(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)
- 변경신고 시기 : 신고사항 중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 발생시
 - ▶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
 - ▶ 신고된 폐기물 이외의 새로 배출되는 폐기물(신규 신고 요건과 동일)
 - ▶ 폐기물 월평균 배출량 30% 이상 증가
 - ▶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·운반자 또는 처리자 변경
 - ▶ 공동처리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 변경

●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

구 분	처리기간	제출·구비서류
지정 폐기물	최초신고	5일 폐기물처리계획서(원본), 수탁처리능력확인서(또는 수탁확인서)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
	변경신고	5일 폐기물처리계획서(원본),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신고필증(원본)

3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 기준 등

준수사항

- ▶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【위반사례 1】

- 위반내용 :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(전용용기 종류별 분리 보관 위반)
- 관련 법 :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
- 조치사항 : 과태료(1천만원 이하)
- 위반사례
 - 00의원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득하고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,누구든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려는 자는 전용용기에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
 - 점검 당시 의료행위시 발생된 조직물류 폐기물(혈액)과 손상성 폐기물(주사바늘)을 전용용기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고 일반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음.

【위반사례 2】

- 위반내용 : 지정폐기물 보관기한 초과
 - 관련 법 :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
 - 행정처분 : 과태료(1천만원 이하)
 - 위반사례
 - 00의원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득하고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, 손상성 폐기물(주사바늘 등)은 30일을 초과하여 보관 하여서는 아니되나,
 - 점검일 현재 손상성폐기물(주사바늘 등) 약 0.2톤을 보관기한인 30일을 초과하여 45일간 보관(15일 초과 보관)한 사실임.
- ※ 의료폐기물 보관기일
- 조직물류폐기물, 병리계폐기물, 일반의료폐기물 : 15일
 - 손상성폐기물 : 30일, 치아 : 60일

【위반사례 3】

- 위반내용 :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(생활폐기물과 분리 보관 위반)
- 관련 법 :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
- 조치사항 : 과태료(1천만원 이하)
- 위반사례
 - 00의원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득하고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,
 - 누구든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려는 자는 생활폐기물과 분리 보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
 - 점검 당시 의료 행위시 발생된 의료폐기물(피묻은 탈지면과 일회용 주사기)을 일반 쓰레기통에 보관한 사실이 있음.

【위반사례 4】

○ 위반내용 :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

○ 관련 법 :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

○ 행정처분 : 과태료(1천만원 이하)

○ 위반사례

- 00의원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득하고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, 의료폐기물의 보관 창고에는 보관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, 보관량,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
- 점검일 현재 의료 행위시 발생한 의료폐기물(일회용 주사기 등) 약 1톤을 보관창고에 보관중임에도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임.

【위반사례 5】

○ 위반내용 :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

○ 관련 법 :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

○ 행정처분 : 과태료(1천만원 이하)

○ 위반사례

- 00의원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득하고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,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중에는 냉장설비를 가동하여야 하나,
- 점검일 현재 의료 행위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보관된 냉장설비를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임.

4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

준수사항

▶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,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받은 자,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【위반사례】

- 위반내용 :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위탁 처리
- 관련 법 :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
- 행정처분 : 고발(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위반사례
 - 00의원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득하고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,
 -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약 0.5톤 가량을 2010. 0. 0.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△△△에 위탁 처리한 사실임.

의료폐기물 배출업소

자율점검 **결과보고서**

자율점검결과보고서

사업장명		대표자	
소재지		업종	

주요 체크 사항	점검결과
○ 신고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- 상호, 소재지, 배출량(30% 증가) 새로운 의료폐기물 발생, 종류별 처리방법, 운반자·처리자 등 변경사항 발생	
○ 계약서 적정 여부(일괄 위·수탁 계약, 기재사항 기입)	
○ 전용용기에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는지 여부 - 일반용기 절대 사용 불가 및 전용용기 재사용 금지에 대한 이행 여부	
○ 의료폐기물이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는지 여부	
○ 발생장소별(병실, 진료실, 처치실 등)로 전용용기 및 보관 표지판 설치 여부	
○ 사용 종료된 전용용기를 밀폐 보관하는지 여부	
○ 생활폐기물과 분리 보관하는지 여부 - 일반 쓰레기통에 피묻은 탈지면, 주사기 등 혼합 금지에 대한 이행 여부	
○ 보관기간 준수 여부 - 조직물류폐기물, 병리계폐기물, 생물·화학폐기물, 일반의료폐기물 15일 - 손상성 폐기물 30일, 치아 60일	
○ 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 -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-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	
○ 냉장시설에 내부 온도 측정 온도계 부착 여부	
○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을 주1회 이상 약물 소독하였는지 여부	
○ 보관중에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를 가동하였는지 여부	
○ 보관창고, 보관장소, 냉동시설에 보관표지판 설치 여부	
○ RFID시스템 적정 사용 여부	
○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교육준수 여부	

위와 같이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.

2017. . .





점검자 직책

성명

(인)

※ 매월 마지막주에 원장 및 환경관리인이 작성하여 서구청 자원순환과(FAX 560-2760)로 전송

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

근거 법령	준수 사항	비고																					
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시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 전에 신고 ○ 변경신고 대상 :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폐기물 배출량 30% 이상 증가 (최근 1년간 배출량 기준) - 폐기물 종류의 신규 발생 -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변경 -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, 처리업체 변경 	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																					
제13조 (시행규칙14조) [별표5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관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용용기에 종류별로 분리 보관 (일반용기 절대 사용 불가 및 전용용기 재사용 금지) - 폐기물이 노출되지 않게 관리 - 생활폐기물과 분리 보관 (일반 쓰레기통에 피묻은 탈지면, 주사기 혼합 금지) - 발생장소별(병실, 진료실, 처치실 등)로 전용용기 및 보관표지판 설치 (여러장소의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 불가) - 사용 종료된 용기는 내부 합성주머니, 외부용기를 밀폐 (밀폐 포장한 용기는 다시 풀어서 사용 금지) - 폐기물 보관기일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식물류폐기물, 병리계폐기물, 생물·화학폐기물, 일반의료폐기물 : 15일 · 손상성폐기물 : 30일 · 치아 : 60일 ○ 보관장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닥과 안벽은 타일,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세척이 용이하여야 함 - 보관창고에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갖출 것 - 보관장소, 냉동시설은 주1회 이상 약물 소독 -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, 보관중에는 냉장설비 기동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료폐기물 보관표지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font-size: small;">① 폐기물종류:</td> <td style="font-size: small;">② 총보관량:</td> <td style="font-size: small;">킬로그램</td> </tr> <tr> <td style="font-size: small;">③ 보관기간:</td> <td style="font-size: small;">④ 관리책임자: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font-size: small;">⑤ 취급시 주의사항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font-size: small;">○보관 시: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font-size: small;">○운반 시: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font-size: small;">⑥ 운반장소:</td> </tr> </table> <div style="margin-left: 150px; font-size: small;"> [보관표지판 규격] 60cm×40cm 30cm×20cm (냉장시설 경우) </div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관창고,보관시설은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, 외부인의 출입제한 - 보관창고,보관장소,냉동시설에 보관중인 폐기물의 종류, 양및 보관기간 기재한 표지판 설치 		의료폐기물 보관표지		① 폐기물종류:	② 총보관량:	킬로그램	③ 보관기간:	④ 관리책임자:		⑤ 취급시 주의사항			○보관 시:			○운반 시:			⑥ 운반장소:			과태료 1000만원 이하
	의료폐기물 보관표지																						
① 폐기물종류:	② 총보관량:	킬로그램																					
③ 보관기간:	④ 관리책임자:																						
⑤ 취급시 주의사항																							
○보관 시:																							
○운반 시:																							
⑥ 운반장소: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기물은 폐기물 수집·운반업 및 처리업 특한 업체에 위탁처리 ○ 폐기물인계서 및 각종대장 작성 의무자는 배출자이며, 사업장내 보관 관리 	과태료 3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
제35조 제1항 제38조 제1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교육기관 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○ 의료폐기물 전년도 실적보고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하여야 함 	과태료 1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	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 <p> 상기 외 의료폐기물 관련한 관계법령 및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자원순환과 (560-4401~5) 또는 환경부(www.me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</p> </div>																							